

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

「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3일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

2. 제정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(2026. 1. 1. 시행)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공정한 선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 (안 제2조)
-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3조 ~ 제9조)
- 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0조)
- 회계감사인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1조 ~ 제13조)

4. 제정규칙안: 별 첨

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의 입법예고란에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7월 23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예산법무과 재정관리팀)

○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예산법무과 (우 10932)

○ 연락처 : 031)940-5981 / FAX 031)940-4059 / tally82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
및 운영 규칙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생년월일 :
- 전화번호 :

제정안 내용	의견	비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 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